

3.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改正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125號 1992. 9. 23

1. 개정이유

건설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제도와 감리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새로운 기술·공법을 적용한 공사 및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대학등 건설기술전문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기 위하여 각 시·도와 국방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정원을 현재 50인이하에서 80인이하로 확대함.

- 다. 건설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설계심의회와 지방건설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국가시행 3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, 지방자치단체시행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 상향조정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시행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확대함.
- 라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중 3억원이상등 일정금액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발주관서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새로운 기술·공법을 적용한 공사 또는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

의대상 공사규모이하인 경우라도 설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바. 새로운 기술·공법을 적용한 공사 또는 터널등 특수구조물공사에 대한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관서의 장이 감리회사로 하여금 다른 감리회사와 공동감리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대학, 연구기관등의 전문가에 별도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.

사.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할 경우 현재는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별로 책임시공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책임시공감리자는 의무적으로 현장상주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별로 책임시공감리자 1인만을 선정하고 현장상주하도록 하여 부족한 책임시공감리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아. 책임시공감리자의 선정을 현재 기술사 또는 건축사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력이 10년이상된 기사1급의 경

험이 많은 기술자도 책임시공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책임시공감리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함.

자. 감리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부 기술심의 담당관실(전화 503-73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